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
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

6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

7.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제7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
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의 방법으
로 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이 이용되는 경우

같은 조 제5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제4항제11호: 신탁업. 다만, 제104조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
는 제외한다.

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외국 보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

가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(이하 “외화
증권”이라 한다)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
수 없는 경우

나.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
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다.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

제77조의3제1항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
로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하는”으로 한다.

제77조의3제2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
가.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
나.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
다.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
가 없을 것

4.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
5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

가.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: 제1항
제1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
을 것

나.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: 제1항
제2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

을 것

6.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(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)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

7.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7조의6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총자산"이라 한다)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

같은 항 제4호 중 "제3호"를 "제3호 및 제4호"로 한다.

제77조의6제3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,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3호,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.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

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4.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.

6.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

12.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

13.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종합투자계좌가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

14.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또는 만기를 정한 종합투자계좌로서 만기 전에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8호에 따른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. 다만, 제8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

같은 항 제2호 중 "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.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를 "그 중

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,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같은 항 제4호 중 “제3호”를 “제5호 및 제6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제77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3(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)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”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의3(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

	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의 방법으로 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이 이용되는 경우
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 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7조제6항제4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. ~ 바. (생략)	4.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사. 제4항제11호: 신탁업. 다만, 제104조제4항 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제63조(소유증권의 예탁) ① (생 략)	제63조(소유증권의 예탁) ① (현 행과 같음)
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 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(이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

하 “외화증권”이라 한다)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 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 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	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에 예탁하는 경우 가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 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 (이하 “외화증권”이라 한 다)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 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.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 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.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7조의3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)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	제77조의3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따라 최근 2개 사업연 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 여 충족하여야 하는 ----- 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1. ~ 2. (생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.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.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.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.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.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: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		<신설> <신설> ③ ~ ⑨ (생략) 제77조의6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① (생략)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	나.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: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6.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(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)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7.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제77조의6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
--	---	--	--	---

	(이하 이 조에서 "총자산"이라 한다)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
4.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. ~ 다. (생략)	5. 제3호 및 제4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1.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.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1. (생략)	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2.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.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	3. ----- -----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,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.
<신설>	4.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.
3. (생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신설>	6.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

4.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. ~ 다. (생략) 5. (생략) 6. (생략) 7. (생략) 8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</u> 7. 제5호 및 제6호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 제4호 각목과 같음) 8. (현행 제5호와 같음) 9. (현행 제6호와 같음) 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 11. (현행 제8호와 같음) 12. <u>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</u> 13. <u>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종합투자계좌가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</u> 14. <u>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또는 만기를 정한 종합투자계좌로서 만기 전에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8호에 따른 시가 또는 공</u>
---	---

9. (생략)	<u>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. 다만, 제8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 15. (현행 제9호와 같음)
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54